

# 제350회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제 8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7년3월16일(목)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보고
2.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논의경과 보고

### 상정된 안건

1.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보고 ..... 2
2.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논의경과 보고 ..... 2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이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8차 정치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여러 가지 정국상의 어려움이 많습시다만 정말 계절의 변화는 어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특위에 새로 보임해서 오신 위원님의 인사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옥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입니다.

제가 사보임을 하는 바람에 오늘 전체회의는 처음이고요, 지난번에 제2소위 회의를 했습니다. 이현승 소위 위원장님 모시고 회의를 했는데 상당히 유의미하고 좋은 그런 소위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정치발전특위 회의에서도 조금 더 의미 있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특위 활동과 관련해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성평등 국회를 향한 여성정치참여 확대 결의문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문은 지난 1월 18일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한국여성의정이 공동주최한 성평등 의회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선토론회에서 이번 20대 국회 51명의 여성 의원 전원과 시민단체의 대표들이 함께 채택한 내용입니다.

특히 여성특별위원회 남인순 위원장께서 이 결의문을 저한테 전달하면서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 의원과 시민단체의 뜨거운 마음과 노력에 공감을 해 주고 또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내용들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한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우리 특위 운영과 관련해서 좋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결의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과 관련해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고 또 헌법개정특위의 정당선거분과 자문위원님들로부터 헌법 개정에 따라서 개선·개혁이 필요한 정당선거제도와 관련해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

견을 말씀해 주시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고 시간은 10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명수 예, 말씀하시지요.

○박재호 위원 오늘 모 신문에 ‘선거법 개정을 통해 이익을 받을 의원이 셀프 개정에 나섰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된 것이 등원 직후인 지난해 6월이었고, 그런데 검찰에서 저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를 시작한 시점은 9월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위 위원이 된 것은 아님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네 차례의 도전을 통해서 현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시다시피 해당 규정 91조는 현역에 비해 정치 신인들에게 훨씬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지 호소라는 선거운동의 범위와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운동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다, 더욱이 현역 국회의원이 이러한 악법에 기대어 득권을 유지하는 행위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해 왔습니다.

이런 경험과 정치적 소신이 우리 당의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향후 법이 개정되더라도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기사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사실이 호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저는 직접 그 기사 내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서 다른 위원님한테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정치발전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좋은 결론이 나도록 함께 노력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정당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모신 외부전문가 두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마는 한국정치학회 회장인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분은 한국입법학회 회장인 홍익대학교 법학과의 음선필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보고

2.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논의경과 보고 (10시41분)

○위원장 이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보고, 의사일정 제2항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논의경과 보고를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김대년 사무총장께서 5월 9일 대선 준비 관계로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전해 드리고요, 대신 박영수 사무차장이 나오셨는데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사무차장께서도 역시 내용 보고 후에 바쁜 대통령 선거 준비 관계로 부득이 자리를 이석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대신 신우용 법제국장, 나오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국장 신우용 예.

○위원장 이명수 답변하게 됨을 미리 양해말씀드립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성숙하고 변화된 국민의 정치참여 요구와 발전된 선거문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정당 및 후보자의 공약 등에 관한 의사표현과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크게 확대하고 주권자로서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며 선거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오늘은 현재까지 입법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의견으로 말과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시설물·

인쇄물 등을 활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둘째,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한 의견으로 언론기관의 정책·공약 비교평가 시 서열화 허용,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추계제도 도입.

셋째, 유권자의 신뢰 보호를 위한 후보자 사퇴 금지.

넷째, 정당·정치자금제도 개선 의견으로 구·시·군당 설치, 정당후원회제도 부활,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실시간 공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면입니다.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위하여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자는 의견입니다.

현행은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개정하여 정당·후보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말로써 개별적인 지지 호소를 하거나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상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다만 일상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 방법인 ARS 자동전화 등을 이용한 자동송신시스템 선거운동은 여전히 금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4면입니다.

시설물·인쇄물 등을 활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입니다.

현행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누구든지 선거법에 개별적으로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시설물·인쇄물 등을 활용하여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시설물·인쇄물 등을 활용한 정치적 의사표현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정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행위는 다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더라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상시 보장하되 과도한 비용 지출을 초래하거나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TV·라디오·신문광고, 시설물 설치, 인쇄물 살포 등의 의사표현 방법에 한정하여 규제하려는 것입니다.

6면입니다.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의 정책·공약 비교평가 시 서열화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현행은 언론기관 등이 정당·후보자의 정책이

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할 수는 있으나 정당·후보자별로 점수를 부여하거나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정하여 선거 여론조사에 신고의무가 면제된 TV방송사, 신문사 등은 독자적으로 또는 시민단체·학회와 공동으로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서열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언론기관 등의 평가 결과와 관련된 자료 일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설한 정책 비교평가 사이트에 등록하여 공개함으로써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의견입니다.

8면을 보시겠습니다.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추계제도 도입입니다.

현행은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공약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도록 유도하여 정책선거를 활성화하고 공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 만료에 따른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공약에 대한 비용추계를 산정·지원할 수 있는 기구를 국회예산정책처에 두도록 하며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중앙당은 재정 규모가 3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공약에 대하여 비용추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당이 선거일 전 1년부터 비용추계를 요청한 공약을 발표하는 때에는 공약 발표일 후 30일까지 의무적으로 비용추계액도 함께 발표하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11면입니다.

유권자의 신뢰 보호를 위하여 후보자의 사퇴를 금지하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현행은 후보자의 사퇴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선거일에 임박하여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사퇴 이전에 실시한 사전투표나 거소투표에서 사퇴한 후보자에게 기표한 무효표가 다수 발생하는 등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후보자 등록 마감 시각 후에는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13면입니다.

정당·정치자금에 대한 개정 의견입니다.

먼저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시·군당 설치 허용입니다.

현행은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하고 정당은 국회의원 지역구와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습니다.

이를 개정하되 당 대표의 사당화 방지와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구·시·군당을 도입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당은 중앙당과 구·시·군당으로 구성하며 임의적 기구로 시·도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합니다.

구·시·군당 대표자는 해당 당부의 당원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비밀투표 방식으로 선출하고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시·군당 운영의 고비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을 구·시·군당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구·시·군당에 회계보고 의무를 부여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수입·지출 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자는 의견입니다.

18면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정당후원회를 허용하여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보장하려 합니다.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실시간 공개제도 도입을 전제로 정당의 중앙당은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시도 및 자치 구·시·군마다 중앙당 후원회의 연락소를 허용하며 후원인은 중앙당, 시·도지부 또는 구·시·군당을 지정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연간 모금·기부 한도액은 150억 원으로 하고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그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20면입니다.

국고보조금 배분·지급 방식 개선입니다.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고 있어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유리한 현행 배분 방식을 폐지하고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 의사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배분·지급하도록 개정하자는 의견입니다.

22면입니다.

정치자금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실시간 공개입니다.

현행은 정치자금 회계는 다음 연도 2월 15일 또는 신분 상실 후 일정 기간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일반인에게 3개월간 열람 및 사본 교부를 허용하되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 명세서에 한하여 열람 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정하여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있는 경우 각각 48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치른 이래 70년의 헌정사를 통하여 투표와 개표 등의 절차사무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더 나아가 후발 민주국가에 선거제도와 투·개표 관련 첨단장비를 지원할 정도의 수준에까지 올라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재외선거, 선상투표, 사전투표 등 유권자의 투표 편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국민참여권을 실질화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 분야에서 여전히 규제 중심의 프레임에 갇혀 정당·후보자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이를 개선하며 또한 정당·정치자금 분야에서는 풀뿌리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촉진하도록 하고 민주주의의 젖줄인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선거 현장과 정당 활동에서 직접 여러 문제점들을 경험한 의원님들과 학계·언론계·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위원회가 마련한 개정 의견이 입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자문위원회 이준한 정당선거분과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자문위원 이준한 헌법개정특위자문위원회 정당선거분과 간사 이준한입니다.

이 보고서는 개인 의견이 아니라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적어도 세 차례 이상 토의했었던 내용의 정리이고요. 헌법 개정 사항과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관련 개정 사항도 혼재돼 있기

때문에 발표는 순서와 또 내용의 침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1면입니다.

현행 헌법 제8조 2항 후단의 “국민의 정치적인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된다”라는 조항 때문에 정당법 17조에 ‘정당은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전국적인 조직이 아닌 지역에 기초한 정당의 출현을 어렵게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헌법에서는 제8조제2항의 후단 부분을 삭제하는 동시에 관련 정당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3면입니다.

헌법 제8조제3항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에 관해서 “국가의 보호”라는 구절도 삭제를 하고 정당 국고보조금의 제도를 삭제하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해외 주요 선진국의 헌법에서 정당 국고보조금 규정에 관련돼 있는 사항이 있는 사례를 찾기가 어렵고 국고보조금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른 사용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았을 때 관련 규정을 삭제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서 선거법이나 정당법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동시에 선거공영제는 관련법에 따라서 확대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잠깐, 위원장님, 질문을 하나……

여기 자료에는 ‘규제’라고 얘기해 놓고 계속 ‘삭제’로 얘기를 하시는데 삭제예요, 규제예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자문위원 이준한 삭제……

○박용진 위원 “국가의 보호” 규정은 삭제라고 하셨고요.

마이크 안 주나요?

○위원장 이명수 잠깐만……

○박용진 위원 지금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 이명수 이따 종합적인 질문 하겠습니까만……

예, 말씀하세요.

○박용진 위원 아니, 이게 나중에 할 수도 있는데, 계속 지금 말씀하시면서 “국가의 보호”는 삭제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국고

보조금 및 정치자금 규제’로 얘기를 하셨는데 계속 삭제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삭제인가요, 원래 의견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자문위원 이준한 예, 삭제 의견이 많으나 현실적으로 중간에 보면 당장 폐지 안 할 경우 보완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고 하나 위원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 의견들을 종합하다 보니 그런 표현상의 차이가 드러날 수는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자문위원 이준한 5면은 넘어가서 일단 7면으로 가겠습니다.

7면은 의원 정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한 위원들 간의 공감대는 넓으나 국민적 지지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를 감안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우리 분과의 의견입니다.

그 의견 중에 의원 정수를 300인으로 규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이에 대해서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의원 정수를 300인으로 규정할 때 선거구 확정이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정수를 300인으로 했을 때 지역대표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비례대표를 늘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또 지역구 의원 정수를 줄이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2 대 1 인구 상·하한 지역구의 규정에 따른다면 2016년 선거에서 하한선이 약 14만 명이었고 상한선이 28만 명이었던 것을 유지하는 동시에 선거법의 확정기준에 따른다면 자치구·시·군의 경계를 임의로 나누어서 다른 자치구·시·군과 합해서 선거구를 이루지 못하고 4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을 수 없다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최소 지역구 의원 정수가 230여 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300명으로 고정시켜 놓는다면 앞으로 당분간은 비례대표의원 정수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9면입니다.

선거법 관련해서는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의 비례성을 더 향상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거제도 도입을 대부분 찬성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면의 통계로도 그간 선거에서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사이의 왜곡이 일어나 심했는지 알 수 있고요.

11면입니다.

그러나 독일식 비례대표제는 초과 의석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1대 1로 함으로써 의원 정수가 대폭 증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은 12면입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헌법에 신설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현행 선거법에 더 규정을 강제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양원제가 나와 있는 5면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분과에서는 양원제의 신설이 다른 무엇보다도 의원 정수의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양원제를 도입할 때 그 외의 비효율성이 더 나타나지 않을 것이냐라는 지적도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논의에서는 하원을 200명으로 하고 상원을 100명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또는 상원을 50명 규모로 하고 250명으로 하원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6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가 최소한 230석이 필요하다고 한 것을 감안한다면 하원을 200석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250명으로 하고 상원을 50명으로 한다면 비례대표의 대폭적인 감소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얘기를 해 왔습니다.

13면의 선거위원회와 관련돼 있는 내용이나 14면의 남녀동수제 도입에 대한 것은 선거법이나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과 관련이 없고 개헌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발표는 제가 줄이고.

마지막으로 15면에 선거 연령의 하향 조정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헌법에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당초 18세로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의 변동에 따라서 더 낮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이고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선거법에 담아야 될 내용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이준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부터 제기되던 내용도 있고 새로 제기한 내용도 있는데 바람직한 결론이 나서 개선이 될 것은 개선이 되고 개정이 될 것은 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앞서 보고 내용 또 전문가 두 분 나오셨는데,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잠시 오늘 새로 보임해 오신 위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양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 안녕하세요?

이양수입니다.

첫날부터 지각을 했는데 당의 행사가 있어 가지고 미리 와서 인사를 못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많이 배워가면서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되고 대한민국이 진일보하는 정치체제 체도를 갖출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도 좋고요, 또 지금 두 분, 앞서 소개해 드린 전문가분께 관련 질문 해도 좋겠습니다.

별도 질의 순서는 배부해 드리지 않았고요. 말씀하실 위원님께서 손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유승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은 대략 5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먼저 우선 진행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발전특별위원회의 관련된 국가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총장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차장이 출석을 했고 차장이 출석하는 경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상임위의 운영 관례를 보면 미리 의견을 물어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는 그런 의견 조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또 오늘 대통령선거의 업무로 인해서 의회에 나와서, 의무적으로 출석하고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또 차장까지도 자리를 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수** 방금 유승희 위원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달리 이의는 없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양해를 했습니다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양해가 사전에 됐으면 하고요.

사무차장, 어떻습니까, 지금 꼭 이석을 하셔야 되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아닙니다. 제가 이미 참석을 했기 때문에 질의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오늘 그러면 답변을 차장께서 하시고 앞으로 총장의 불참에 대해서는 지금 유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예, 다 아시다시피 대선이 조기에 결정됐고 저희들이 남은 기간이 얼마 없습니다. 사실상 선거가 12월 달에 있을 경우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선거를 치르는데 지금 갑자기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전까지 못 했던 일들을, 산적했던 일을 한꺼번에 짧은 기간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지금 굉장히 결정해야 될, 사무실에서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부터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사정은 이해를 하는데 절차상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간사님들한테 최소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또 다른 말씀 하십시오.

○**유승희 위원** 정치발전특위 제1소위 진행 상황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해 주셔서 진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는데,

우선 현안 부분 중에 확정장치 사용 허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작년에 논의를 하다가 중단된 측면이 있어서 여러 가지 난상토론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예비후보자의 확정장치 허용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조사처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의뢰를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1조제1항에 따르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정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지지호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으로 지지호소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법으로 확정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즉 지지호소를 말로 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확정장치를 이용한 지지호소는 금지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의뢰 중이고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91조제1항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폐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입법조사처에 의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대한 입법조사처의 답변은 20일에 저희들이 받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제91조 확정장치의 사용 제한에 관련한 조치 건수를 받았는데 전체 1377건 중 30건이 이 관련된 조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건은 고발이 됐고 나머지 28건은 경고 등의 조치를 했고요. 그 고발 세부내역은 제가 받은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참고자료로 배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조치된 건은 지금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검찰에서 주최한 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선관위원회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참고인으로 나와 계신 강원택 교수님과 음선희 교수님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먼저 박영수 사무차장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유승희 위원** 검찰 조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검찰에서 91조 위반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유승희 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찰 송치 건을?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그냥 검찰로 막 바로 들어간 건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된다는 건지, 그런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 위원** 고발 건수는 검찰에 송치를 한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저희가 조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관리합니다라는 검찰에서 한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검찰에서 자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유승희 위원** 검찰에서 선관위원회에다 자료를 주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관련해서 검찰에 송치된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예.

○**유승희 위원** 그러면 선거법 관련한 조치사항이기 때문에 선관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의무사항 아닙니까? 법적 의무사항이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그게 수시로 계속 통계가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계속 파악할 수도 없고요. 저희들이 특별히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필요한 자료를 달라 해서 협조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라는……

○**유승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조치된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선관위가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셔야 되긴 하는데요.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고 한 가지 질의가 더 있는데, 지금 헌법상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차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예, 그렇

습니다.

○**유승희 위원** 다른 나라의 사례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라고 된 데도 있고 선거위원회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헌법기관으로 된 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원래 헌법기관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60년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우리나라는 63년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될 때부터 헌법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유승희 위원** 헌법기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그렇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법적 위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라는 국가에 따라 다르지요. 헌법기관으로 할 것이냐 법률기관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은 그 나라의 선거의 전통이라든가 역사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고려되어 있고 헌법기관으로 하는 나라들도 있고요, 법률기관으로 하는 나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저희들이 따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예.

○**위원장 이명수** 유 위원님 수고하셨고, 강 교수님하고 음 교수님 간략히 답변해 주실까요?

○**서울대학교정치학과교수 강원택** 한 가지 먼저 정리하면 제가 작년에 한국정치학회를 맡았고요. 저희 학회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 회장입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 정정하고요.

유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겠습니다라는 제가 들으면서도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말하자면 저게 왜 크게 문제가 될까 하는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선거법에 선거운동의 규제와 관련된 부분은 지나칠 정도로 불필요한 규제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런 관심의 대상도 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규제조항으로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이게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법률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부분들이 계속 이어져서…… 사실은 이번에 선관위에서 굉장히 전향적인 의견을 내셨습니까마는 사실은 조금 더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시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이제는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선거운동도 그런 차원에서 유권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능하면 최대한 기회가 보장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소한 부분의 문제로 인해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떨어뜨릴 수 있고 또 후보자와 유권자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발전특위에서 과감한 선거운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 주시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입법학회장 음선필** 음선필입니다.

약간 보충해서 말씀드리지요.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전반적으로 동의하고요.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특히 예비후보자들의 확정기 사용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시니까 말씀드리자면 말씀 그대로 어차피 선거운동, 특히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의 최대한 자유를 보장해주는 건 맞을 겁니다. 그중에 확정기 사용은 아마 소음 문제 때문에 규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 데요.

확정기 사용의 시점이 문제가 되어서 아마 지적하셨다면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일반적으로 예비후보자를 비롯한 후보자가 당연히 사용하겠지만 예비후보자는 그런 기간이 좀 길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확정기 사용에 규제가 들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 나름 선거운동의 평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나름 합리적이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 좀 더 참조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 제가 언뜻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이 선관위의 헌법적 지위, 이게 어느 정도 세계적으로 타당한 입법례인가 질문하신 취지로 생각이 되는데요. 유레가 드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나라마다 헌정사의 특성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 헌법에서, 선관위를 선거위원회로 나중에 이름을 바꾸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헌법기관으로 두는 것은 괜찮은 것이고 우수하다고 봅니다. 괜찮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주목할 만한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아공 헌법이 최근에 체제

전환에 성공했던 나라의 하나로 예를 들 때 거기에는 선거위원회를 아예 입헌민주주의를 뒷받침해 주는 하나의 기관이라 해 가지고 헌법 자체에 그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진 선거민주주의 또는 선거가 상당히 정착이 된 나라에서는 굳이 헌법까지 갈 필요 없었지만 우리는 아시다시피 3·15 부정선거 이후에 하나의 반성적 차원에서 헌법기관화됐고 그 이후로도 역할 수행은 무난히 해 왔다고 봅니다. 단지 헌법기관으로서 어떠한 위상을 줄 것인가는 더 고민할 문제가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말씀 감사하고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바람직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덕흠 위원님, 순서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박 위원 하시고, 그다음에 박용진 위원님 하시면 괜찮을까요?

○**박용진 위원** 윤소하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어요. 제가 봤어요. 박덕흠 위원님 하시고……

○**위원장 이명수** 먼저 하시고요.

○**박덕흠 위원** 진행상 먼저 확정기 장치 사용 금지 조항에 대해서 자문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으셔서 또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확정기 사용을 한다는 취지는, 저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행법상 확정기를 사용해서 후보자들이 인사하고 알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은 대법원 판례가 생겼어요, 권선택 시장님의.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데, 예비후보자는 얼굴을 알리고 본인을 홍보할 기회가 없다는 주장은 조금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행사장 다니면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확정기를 사용해서 자기가 누구다라고 알리고 또 거기에 걸맞은 축사를 하고 그 행사에 맞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자기 지지 연설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조항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일반적으로 동창회다 그러면 동창회에 맞게 후보자들이 인사말을 하면 되는데 거기서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지지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것이 상시적으로 4년 동안 허용이 되다 보면 상당히 국민들이 혼란이 온다 이거

지요. 이렇게 안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식상해 가지고 선거할 때도 불참한다든가 왜 이러냐 하는 식으로 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개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들은 언제든지 자기 얼굴 알리는 데는 지금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법 개정하는 것도 명함 같은 것도 줄 수 있게끔 하자는 의견인데 그런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확정기 자체를 사용을 해서, 지금 국회의원 선거만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선거, 예를 들면 지방선거가 제일 문제가 되지요.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들이 군의원 출신 나오지요, 도의원 또 군수·도지사 후보들 이렇게 해서 한 10여 명 이상 다니면서 지지하면 행사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규제를 해야만 그래도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활동하는데 우리가 지장을 안 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된다 이래서 저는 반대 의견을 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하여튼 규제를 해야 되느냐 완화해야 되느냐, 지난번 소위 때 말씀하신 사항 계속 이어가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말씀하신 사항 포함해서 우리 소위에서 우선 충분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한 답변은 필요 없으신 건가요? 의견만 말씀하신 거지요, 박 위원님?

그러면 박용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진 위원** 지난번 소위에 제가 참여는 못했습니다만 관련된 말씀 내용을 전해 들었고요. 사무차장님께 관련해서 여쭙어 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가 질의를 했어요. 공직선거법 91조 제1항을 2004년에 개정할 당시 입법취지를 확인을 해 달라고 그랬더니 ‘확성장치의 무제한적 사용이 심각한 소음 공해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해와 선거비용의 과다지출을 가져오므로 이에 대해서 제한을 규정한 거다’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여쭙어 보겠습니다.

버스에 올라서 마이크 잡고 인사하는 것도 확성장치에 해당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그렇습니다.

**○박용진 위원** 경로당·복지관, 해당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예.

**○박용진 위원** 여기에 특별히 선거비용의 과다지출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비용은 크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러면 적게 들어가는 것은 무슨 비용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비용 문제보다는 아까……

**○박용진 위원** 비용은 안 들어간다 그 말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그렇지요. 비용은 크게 더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용진 위원** 예, 그렇습니다. 비용은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예.

**○박용진 위원** 그리고 이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해를 가하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그 부분이 아까 음선풐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길거리에서 확성장치를 갖고 얘기하는 부분……

**○박용진 위원** 그렇지요. 이미 확성장치가 되어 있는 행사나 시설이나 버스나 이런 데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그런 부분하고, 예를 들면 아파트 구내방송 같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박용진 위원** 아파트 구내방송을 선거에 이용했다는 얘기는 제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전면적으로 허용이 됐을 때 그런 예상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행사장에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박용진 위원** 그렇지요. 행사장에서 박덕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일을 벌이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자기 무덤을 파는 후보예요. 남의 행사장에 와 가지고 눈치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아마 유권자들이 알아서 다 정리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항에 대해서 전면적 폐지라거나 이렇게까지 어렵다면 합리적으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지 무슨 경로당하고 복지관에 가서 인사하다가 ‘저 좀 잘 부탁드립니다’ 정도, 사실은 예비후보들에게 다 허용되어 있는 수준의 선거운동을 한 건데 단지 확성장치를 이용해서 했다는 이유만으로 고발에 이르고 이후에 선거법

시비가 걸리고 이러는 것 자체는 선거관리위원회로서도 피곤한 일 아닌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 사용 부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주민들의 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않는 제한된 범위에서 사용을 허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입법정책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위원** 지금은 91조 1항이 그냥 확장장치라고만 단순 규정해 놓기 때문에, 차장님도 답변 중에 ‘길거리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 구내방송을 통해서 이런 경우는 사실 없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들고 다니거나 하게 되는 것은 지금 선관위가 직접 단속하시잖아요. 예비후보 기간에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예.

○**박용진 위원** 본선거 기간에만 선거운동에 필요한 부분을 쓰는 거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91조 내용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확장장치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고요. 하나는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장장치를 사용해서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박용진 위원** 그 2개를 나누시면 안 돼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그래서 선거운동 기간하고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박용진 위원** 예비후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요. 제한적으로, 방법을 제한해 냈지요.

○**박용진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것 풀겠다고 아까 보고하실 때 얘기하셨잖아요. 확장장치를 이용하는 게 입으로 하는 거지 필요하는 겁니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무제한적으로 풀겠다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용진 위원** 지금 전체적인 선거법 개정 방향으로 다르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다르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용진 위원** 제가 지금 사례는 쪽 들었고 충분히 현장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선관위에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확장장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현장의 문제점들,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용진 위원** 제가 짧게 몇 가지만 여쭙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송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선거 후보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예.

○**박용진 위원** 지금요 방송토론이 지나치게 제약되고 재미없고,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무슨 방송토론과 관련된, 별도의 어떤 진행과 관련된, 진행규칙과 관련된 법이 따로 있나요? 법에 의해서 그렇게 재미없는 게 만들어진 것인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참여하는 후보자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후보자가 토론에 참여하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후보자 간의 공평성 이 문제 때문에 재미없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의견을, 하여튼 유권자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좀 더 활기찬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 개정의견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방송토론의 경우에는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꾸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일반 방송사나 언론사가 주관하는 것은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방식을 정하면 되는 것인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은 아

무래도 선관위가 주관하는 법정 토론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니까 선관위가 그것과 관련된 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어요, 개정의견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그 부분에 대한 개정의견을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박용진 위원** 아,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들도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선거의 경우에 방송토론이 도입된 게 한 20년 다 돼 가는데 여전히 제도와 운영방식은 낡은 방식 그대로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법정 정해져 있는 선거 토론회에 참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별금만 내고 말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예, 과태료가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당선이란 이런 데 전혀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래서 대통령선거뿐만이 아니라 일반 다른 총선에서도 앞서 나가는 후보자들은 방송에 아예 안 나오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합동연설회를 대신해서 유권자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지 자기가 알릴 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에 대한 엄청난 권리를 침해하는 사안이 벌어졌는데 겨우 500만 원이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과태료를 줌, 금액을 대폭 상향해서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박용진 위원** 돈 많은 사람은 그러면 과태료 내고 안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보다 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후보자를 내버려 두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유리하다 싶으면 유권자들에게 알권리나 검증 기회를 다 박탈해 버리고 안 나와 버리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저는 이런 경우를 자꾸 더 엄하게 해야 정치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약이 된다고 봅니다. 현역 국회의원들한테는 엄청나게 유리하

고요, 정치 신인들에게는 자기가 비교 검증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거든요, 유권자의 권리뿐만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박용진 위원** 과태료 말고 좀 더 엄한 것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예.

○**위원장 이명수** 박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윤소하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전희경 위원님 하십시오.

○**윤소하 위원** 정의당 윤소하입니다.

먼저 말을 푼다, 이 부분은 박용진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2000 총선에 두 번 지역구 활동을 해 봤는데 푼다는 취지와 확정기 사용 여부는요, 예를 들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실내나 이런 부분 확정장치는 다 마련돼 있는데 거기 가서 인사하는 것 자체가 규정이 된다. 물론 선거운동의 기간이나 방식 이런 부분에서는 선관위에서 다시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저는 정당 정치자금법 개정 관련해서 지금 현재에서 정당후원회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17년 6월 30일까지 권고한 것으로,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각급 선거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과 무관하게 지금 정당후원회를, 특히 저희 소수당 같은 경우에 정당후원회를 부활시키는 부분은 대단히 시급하고 정당 후원활동이 일상화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맞다, 당위적인 부분인데, 실제로 이것은 시기를 정한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빨리 좀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후원회 6월 30일까지, 권고사항이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저희도 개정의견을 제출했고요, 그 이전에 후원회제도가 제도적으로 정비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소하 위원**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 배분 지급방식도 온당한, 그동안에 저희들도 주장을 해왔지만 거기에는 조금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고보조금 배분 지급방식이 온당한 방향으로 개선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지금 이 부분이 선관위에서는 실제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견 어떠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정의견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제출했습니다.

○윤소하 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내년 지방선거다, 그다음에 총선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에 부분들을 바꾸어 내야 된다는 그런 것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도 같이 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실질적인 노력 그리고 성과를 내야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말씀 다 하셨나요?

○윤소하 위원 예.

○위원장 이명수 그러면 다음은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희경 위원 전희경입니다.

지금 말씀, 선관위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주셨는데 이 개정의견을 놓고 우리가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가 입법기관인데 선관위에 개정안을 마련해 달라, 그런 식으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입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무 주무부처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현실 적합성이나 이런 면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들어 볼 수는 있어도 선관위가 입법을, 물론 정부안으로 발의는 할 수 있겠으나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선관위에게 어떤 개정안 도출을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썩 온당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관위에서 91조의 확장장치 사용과 관련된 자료를 지난 1소위 회의에서 제가 요청을 했고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체 내용 중에서 고발된 건수가 91조 관련해서 2건이더라고요, 앞서 유승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고발된 2건 역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했다라는 매우 중대한 법 위반 사실 그리고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이라는 매우 중대한 법 위반 사실과 병합되어서 함께 적용된 사안이더라고요.

차장님, 맞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희경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체 공직선거법이나 공직선거법이 현실과 맞지 않아서 벌어지는 다양한 불편부당 사례들이 있는데 이 91조에 정치발전특위가 지나치게 우리 전체 특위 차원의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은 저는 어찌 보면 이 91조, 오늘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앞서 언급이 있었는데 그런 식의 괜히 공연한 빌미를 주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현장 선거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보다 제가 지식도 경험도 부족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공직선거법 여기 보면 ‘돈은 묶고 입은 풀다’는 공직선거법 제정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렇게 선관위에서도 개정자료, 개정안을 내시면서, 의견을 내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는 만고불변의 어떤 진리인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돈은 오히려 다 흐름이, 다 꺾적이 보이고 이것이 계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걸리고 잡고자 하면 다 추적해서 잡을 수 있지만 입은 풀다라는 부분 말입니다, 요즘같이 미디어가 발달하고 SNS라든지 여러 팟캐스트 이런 수단들이 넘쳐 나는 지금 선거 현실에서 입은 풀다, 돈은 묶고 입은 풀다, 입은 푸는 데 대해서 선관위가 너무 지나치게 지금 현실과 다른, 어찌 보면 좋게 표현하면 관대하고 조금 야박하게 표현하면 너무 이것에 대한 부작용과 역기능을 오히려 등한시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무부처로서 지금 돈은 묶고 입은 풀다 이것만 새기실 것이 아니라 달라진 정치현실을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름하여 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를 관리하시는 데예요. 이렇게 부처 이름에 실무적인 일을 열심히 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부처명도 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개정의견에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일 만한 그래서 토론을 하게 되면 이것 진짜 몇 날 며칠 몇 년을 토의해도 끝이 없을 만한 내용들을 개정의견으로 과감하게 지금 제시를 하셨다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일례로 ‘언론기관에 정책공약 비교 평

가 시 서열화 허용' 지금 서열화가 안 좋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엄연히 드러나는 개인의 노력에 의한 서열화 이런 부분도 다 이것 표시하면 안 된다고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마당에 어떤 정책공약 이것을 비교 평가해서, 특정 학회하고 비교 평가해서 서열화를 허용한다. 그 서열화된 랭킹이 주는 바이어스(bias)라는 게 얼마나 클 텐데 이런 것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위원회라는 이름을 달고 이렇게 과감하게 개정의견 제시하셔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여기 보면 기타 웬만한 것은 다 그냥 민주시민, 민주인식, 민주 눈높이에 맞다고 대충 이렇게 취지 제안이유는 해 놓으시면서 핵심 쟁점들에 있어서 이렇게 강수를 두시는 이유를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본연 본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생각해 보시고 정치발전전특위에 함께 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여러 가지 말씀 하셨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한 판단이나 결정 또 결론 여러 가지 개정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하고 국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장 이명수** 예, 말씀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저희가 개정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면 정치적으로 정당 간에 쟁점이 되던 부분들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자제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주로 개정의견을 제출하는 부분은 선거를 관리하면서 현장에서 유권자들의 요구라든가 또 언론이라든지 정당이나 정치학회라든지 이런 여러 관련된 분들의 의견들을 수합해서 그 부분들을 정리해서 그냥 국회에다가 의견을 제출하고 저희들이 입법 발의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개정의견을 제출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여러 의견들을 들어서 그것들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으로 정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국회에서 논의해서 정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다음은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제가 좀 늦게 와서 전체 분위기에 맞는 얘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사실은 선관위가 과도한 규제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선관위가 지금까지 선거 관리를 넘어서 그 이상의 역할을 해 온 것의 책임은 저는 선관위에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역으로 정치에 책임이 있고 국회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국회가 어찌면 과도하게 선관위에게 그런 역할을 주어 놓고 지금 와서 왜 이렇게 과도하게 하나 이러면 저는 억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방향으로 가면 선거라는 것을 너무 규제 관점에서 정치를 너무 제약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 온 것에 대한 불만은 있고 그 결과로 선관위가 지나치게 비대해져 있다 이런 점에서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만 그 책임 소재는 분명히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구요.

저는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인과 유권자 사이에 거리가 너무 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거리를 좁히는 게 중요하고요. 거리를 좁혀야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정치활동을 하고 또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권자가 뭘 원하는지 가장 신속하게 반응하고 그것에 대한 정치행위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정치의 온당한 모습이라고 하면 어쨌든 정치인과 유권자 간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야 되고 곁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아닌 다른 요소들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는 것처럼 되는 현실은 저는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10여 년 넘게, 제 기억으로만 따져도 한 20년 가까이…… 2004년인가요, 선거법인가 정당법 바꿀 때부터 큰 대원칙이 '돈은 묵고 입은 쏜다' 이런 기조였던 것 같구요.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또 정치원칙에도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자꾸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말고 조금 더 과감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면적으로 접근해야지요. 유권자의 관점에서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에서

선거 치러 보신 분들의 정치현실에 대한 지적도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대원칙이 있다면 유권자가 정치인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이 원칙을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것은 제가 선관위에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정치권이 그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마이크, 지금 논란이 되는 게 91조 1항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저는 이 문제도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원칙에 맞는 세부조항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원칙은 있는데 세부조항 들어가서는 이러저러한 현실적 고려 해 보니 안 되겠다 이래 버리면 원칙이라는 게 사실상 형해화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확장장치 활용하는 문제, 이용하는 문제는 저는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을 풀었을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다른 장치들로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처벌할 수도 있고 제약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유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이른바 현실정치인이 되기 전에는 정치평론가로 불렀는데요. 정치평론가도 정치인들이 개개 국회의원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일반 유권자는 거의 모른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한된 기간 내에 정보가 허용되고 그 기간만 선거운동이 되면 일반 국민들 유권자들은 깜깜이 선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깜깜이 선거를 통해서 혜택을 누리는 것은 현실의 현직자들이지요. 그러면 도전자들이 도전하는 게 참 쉽지 않고, 그러다 보면 지역에서 열심히 터를 닦아서 정치하기보다는 공천과 관련된 언저리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시도로 가게 되니까 정치 과정 자체가 왜곡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치가 삶의 현장에서, 동네에서 이루어지고 거기서 당락이 좌우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 저는 그 기조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더 세계 이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치라는 게 혼자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분들이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거라 저도 많이 답답하기는 합니다만 오늘은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

리는 기회 같아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저는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저러한 현실적 고려도 다 존중할 수 있습니다만 최소한 정치와 선거만큼은 유권자의 관점에 서는 게 맞다 이 말씀만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이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혹시 말씀 안하신 분 중에 없으시지요?

유승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유승희 위원** 제가 공직선거법 제91조 1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1조제1항에 따르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장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운동의 범주가 어떻게 됩니까?

박영수 차장, 답변해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지금 현재 법에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어떤 게 선거운동이다 이런 내용은 없고요. 당선되거나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선거운동을 판례나 이렇게 형성된 내용을 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러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지지 호소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그렇습니다.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러면 선거운동을 위해서 지지 호소를 말로 하지 않고, 선거운동복을 예비후보 기간에 입을 수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예.

○**유승희 위원** 예비후보 기간에 예비후보가 선거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 그것은 지지 호소입니까, 아닙니까? 선거운동입니까,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선거운동복의 내용이, 글이 어떤 게 써져 있는지 그런 것을 따져야 될 것 같고요.

○**유승희 위원** 선거운동복은 뻔하지요. ‘기호 1번’ 내지는 ‘기호 2번 누구누구’ 이름 써 있지요. 그것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선거운동복은 선거운동복에 다른 구호를 쓸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예, 예.

○**유승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단순히 그 복장만 착용했다고 해서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게……

○**유승희 위원** “예비후보 누구누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그것은 선거운동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뭐냐 하면 선관위원회에서는 대부분 경고 조치로 끝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고발이 들어가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리고 고발 조치 2건은 이 마이크를 잡은 지지 호소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금품을 제공했을 경우에 그것을 엮어서 고발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조항을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면 대부분 경고 조치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경고 조치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 조항이 있어서 이것을 검찰로 넘깁니다. 검찰에 곧바로 고발할 수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예.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러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선거법 위반이지요, 예를 들면. 우선은 마이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선거운동의 범주를 어떻게 따지느냐는 결국은 법리적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이 마이크를 잡는 행위 그 자체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또 따져 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기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선거운동의 범주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기소 이후에 법원에서 따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마이크를 잡은 것만 가지고, 만약에 2번의 내지는 1번의 옷을 입고 마이크를 잡은 것을 가지고 동영상을 촬영해서 검찰에 넘겨요. 그러면 검찰로서는 이 법조항에 의해서 기소를 할 수밖에 없지요. 기소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사례에 나와 있지만 행사장 마이크 사용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

영해서 현역에 있는 국회의원의, 예를 들면 제3자를 통해서 예비후보자를 고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것은 합리적입니까, 불합리한 조항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까?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이래서 선관위원회에서는 이 법조항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고 조치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법조항을 가지고, 이 법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것을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부분 경고 조치를 취하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우선적으로는 저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합리적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옛날에는 확성기를 들고 다니면서 길거리에 대고 크게 외쳐댔기 때문에 소음이나 공해나 아니면 확성기를 엄청난 확성기를 쓸 경우에 비용 문제를 고민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 조항은 어디 마을금고라든지 여러 가지 집회라든지 아니면 무슨 구청에서 하는 노래교실 이런 데 가면 당연히 다 마이크 쓰니까, 요즘에는 조그마한 공간에서도 다 마이크 쓰지 않습니까? 그때는 마이크를 주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휴대 마이크지요. 그러면 그 마이크를 어떻게 거절을 합니까? 그러면 그 마이크를 잡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지지선언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이 부분은 그것을 선거운동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법리적인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일단 촬영을 해서 검찰에 고발하면 그것은 기소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되어 있고, 선관위원회에 고발을 하면 선관위원회에서는 이 조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신분의 경우에는 다 풀었기 때문에 선거운동 할 수 있고 지지 호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고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현장에서 일어난 이런 문제를 악용할 소지를 사전에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을 다시 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이 충돌하는 지점에 대해서.

그래서 현역 의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안 합니다, 이 조항 때문에. 왜?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면 마이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현역 의원으로서는 선거기간 60

일 전까지는 언제든지 마이크도 잡을 수 있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고 의정보고를 할 수 있고 또 어디 가서나 마이크를 들고 지지 호소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출마했다는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부탁드립니다', 뭘 잘 부탁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잘 부탁드립니다' 이 얘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가진 현역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조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예비후보자들한테는 정치 신인들이나 예비후보자들, 정치 신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조항으로 이것이 작동한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도 입법기관으로서 이것을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사항인 것 같지만 이것이 선거법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규제라는 것을 내지는 지금 선거법이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저는 정말 엄밀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차장, 얘기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시다마는 확정장치 사용이 91조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공개장소 연설·대담처럼 몇 가지 허용되는 부분만 예외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정장치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허용된 부분 외에는 다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장소에 가서 이미 설치된 마이크를 가지고 간단하게 인사하는 부분, 인사하는 부분 가지고는 문제는 안 되겠지만 선거운동에 이를 정도의 행위를 했을 때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충분히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더라도 전면적인 마이크 사용을 허용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제한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가능하다, 일부 선거운동 방법으로. 그런 정도는 논의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박덕흠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박용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덕흠 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확정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차장님, 쉽게 얘기하면 지금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 내 다수의 공무원과 통화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지지 호소성 발언 하면 선거법 위반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이런 부분이 더 시급한 거예요, 확정기 자체를 갖고 하는 것보다도.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비후보자가 불리하다는 것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국회의원도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이 법을. 국회의원이라고 그래서 특혜 받는 게 아니라 어느 행사장에 가서 마이크를 잡고 그 행사에 걸맞은 축하 메시지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괜찮는데 국회의원도 거기서 지지성 발언을 하면 예비후보자들과 똑같이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19대 때.

사무차장님, 사례집 같은 경우에 후보자들 등록하면 다 주잖아요, 한 권씩. 법에 위반되는 사례 이런 것 주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예,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이것을 다 받고 숙지를 저도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선거운동.

그래서 확정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지금 논점이 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부분 폐단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시장 같은 데서 지지자들이 무슨 친목단체 모임을 한다고 해서 확정기 장치 해 놓고 거기서 떠들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지금 현역이나 예비후보자들이 경로당이든 노래교실 이런 데 가서 자기를 알리려면 얼마든지 노래 부르고, 이러는 것 선거법에 안 걸려요. 그렇지요, 사무차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예, 선거운동을 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래서 노래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보자들이 자기를 알릴 기회가 엄청 많아요. 노인정 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요? 다 확정기 쓰고 다 사용하잖아요.

사용하는데, 단지 하나 거기에서 지지발언이

있는데, 지지발언이라는 맹점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공약을 얘기해도 지지발언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얘기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그래서 못 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행사장에서. 그렇지요? 국민들 알권리를 빙자해서 그런 것이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사무차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예, 입법 취지는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아까 전 위원님 얘기했듯이—큰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후보자들도. 안 그랬으면 지금 법으로 많이 걸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극소수라는 얘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부분은 지켜 가면서 선거운동을 해 나가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명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내용을 듣기로 했는데 너무 특정한 사항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위원 제가 시간 절약을 위해서 사무차장님께 짧게 짧게 의견 관련해서 여쭙어 볼 테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후보자 사퇴 금지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별도의 처벌조항이 있는 건지, 처벌조항도 없이…… 그런데 후보자가 사퇴한다고 할 때 그건 후보자 본인의 정치적 자유 아닙니까? 그것을 금지한다고 하는 게 위헌 사례는 없는 건지 혹은 사퇴를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사퇴하거나 본인이 사퇴를 선언해 버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 무슨 처벌조항이 있는 건지, 처벌조항이 생기면 그것도 좀 논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국고보조와 관련해서 글썽요, 모르겠습니다. 제1당이라 나중에 당 지도부로부터 혼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국고보조를 이렇게 폐지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대 정당들 중심의 정치질서에 대해서 좋은 어떤 균열을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의 핵심은 교섭단체 중심의 국고보조 우선배정을 폐지하는 것 그리고 국회의원의 석수 중심이 아니라 정당지지율 중심으로 배분하겠다는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그렇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더 제안말씀을 드리면, 독일의 경우에 있는 것처럼 당비 및 후원금에 연동하는 당비 매칭펀드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는 어렵더라도 전체 국고보조금의 한 10% 정도나 5% 정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저는 계속 요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해 왔던 사람이라서 그 의견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전희경 위원님 가셨는데, 아까 전희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좀 타당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사가 편향 논란에 계속 싸이고 있는데, 일정 수준의 언론사라 하더라도 그 언론사가 서열을 매겨서 방송하게 되면 그 일정한 영향력이 더 큰 과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회적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있으셨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서는 해외 입법 사례가 다 있는데 서열화와 관련해서는 입법 사례가 없어요, 해외 입법 사례가. 검토한 게 있으신지 말씀 주십시오.

○위원장 이명수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첫 번째 후보자 사퇴와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외국 같은 경우는 우선 대부분의 나라가 후보자 등록을 한 이후에는 사퇴를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퇴 금지를 개정의견으로 제출한 배경은 우리가 선거 개표하고 난 결과에서 무효표 문제가 항상 문제가 돼 왔습니다. 그런데 부재자투표나 사전투표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사퇴를 해 버리면 그 표들에 사표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선거 때 문제가 돼 왔었습니다.

그리고 유권자의 어떤 참정권을 제한해 버리는 사실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보자가 특정 시점 이후에는 정치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특정 시점을 정해서 그 이후에는 사퇴를 제한하는 것이 맞다 하는 의견이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사퇴하는 것도 어떤 참

정권의 자유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있지만 외국 사례라든지 또 현실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고려를, 입법적으로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박용진 위원 해외 사례에는 처벌조항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대부분 선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다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개정의견에서 처벌규정을 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자금 부분에서 매칭펀드 부분은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방식은 어쨌든 간에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민의 의사가 좀 더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자는 것이고요.

매칭펀드 부분도 정당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그 부분 검토를 했었는데 긍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개정의견에는 포함되지 않았습시다라는 현실적으로 정당 간에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들도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서열화 비교·평가 부분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 부분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법이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금지가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의견으로 제시한 배경에는 어쨌든 간에 가장 먼저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유권자들이 공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교·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갖고 있는 언론사라든지 아니면 단체 같은데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비교해서 평가해 주면 유권자들이 그 공약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공약 자체를 현실성이 없는 공약들도 제시를 해서 일단 선거에서 도움을 받고 끝나고 난 뒤에, 당선되고 난 뒤에 그 공약들을 실천 안 하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시를 하게 되었는데 서열화 부분은 분명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서열화했을 때 언론 같은 데서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여러 언론사가 그 부분들을 하게 되면 그 자체도 공약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언론사가 여러 언론사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했을 때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을 했습니다.

○박용진 위원 해외 입법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외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예 공약에 대해서 평가해서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박용진 위원 제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예.

○박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현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憲昇 위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또 저희 2소위에서 했던 내용들을 잠깐만 보고 겸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확장장치에 대해서 발언해 주셨는데, 저는 확장장치의 사용 유무보다는 그 내용에 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발언했느냐에 대해서 선거법을 적용하는 게 맞지 단순히 휴대용 확장장치를 이용했다 그것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실내하고 버스 같은 것 탈 때는 사실 저는 마이크 잡아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육성으로만 인사를 하나 버스 안에 있는 마이크를 이용해서 인사를 하나 내용 전달은 같은 건데 그런 것까지 금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실내보다는 실외 옥외장소 그런 집회에서 과도하게 휴대용 확장장치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면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좀 정리를 해서 사례집 비슷하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좀 더 세분화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정책·공약 서열화 문제 이것은 저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공약에 대해서 매우 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이다,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괜찮지만 5명 후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2·3·4·5위로 서열을 매긴다든지 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 판단은 유권자에게 맡겨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소위를 하면서 몇 가지 의제를 추가했는데 의안 처리 효율화 방안하고 본회의 의안 심사 충실화 방안 그리고 본회의장 질서 문란 시 제재 강화 이 세 가지 의제를 추가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본회의 의안 심사 충실화 방안인데요. 보통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열리는 당일 날 올라와 가지고 의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쳤으니까, 그냥 으레 다 서로 여야 합의를 하고 협의를 했으니까 찬성표를 많이 누르는데, 사실 그 내용을 좀 더 세분화해 가지고 알아야지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래서 법사위에서 당일 날 통과한 법률안은 올리지 말고 하루 정도 숙려기간을 둔다든지, 예외적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당일에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상임위 의결을 거쳐 가지고 법사위 체계심사를 마무리한 법률안은 그 법률안하고 상임위 심사경과 요약자료를 의원실에 송부해 가지고 의원이 본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들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2소위에서 더욱 충실히 의논을 해서 합의된 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이현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유승희 위원** 저희들이 입법기관이지만 법을 하나 고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상당히 체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작은 하나의 법이라 할지라도 법 하나를 개정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점에 대해서 하나만 다시 짚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91조 1항 관련해서는 지지 호소를 할 수 없을 뿐이지 다른 건 다 마이크 잡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법의 내용과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선관위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짚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문제 제기를 했듯이 선거운동의 범주를 어디다 두느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 대충 다

경고 조치를 취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사전선거운동 중의 일부를 풀었기 때문에, 예비후보자 신분으로서는 어느 누구나 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경고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 때문에 검찰로 막 바로 고발을 할 경우에는 기소 안 할 재간이 없습니다. 노래를 하면 괜찮다? 노래를 하면서 거기다가, 노래곡목은 다른 노래로 하고 가사를 즉석에서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즉각적으로 개사를 해서 노래를 부른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가 상당 부분 악용될 소지가 있고 또 이 악용의 소지가 지금 상당 부분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구당 부활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소위에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현재의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입니다. 소선거구제에서 지금 시군 중심으로, 시군구 지방자치 단위로 당을 만들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다음에 운영하는데 비합리성이 많이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일일이 다 구구절절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중대선거구제로 바꿀 경우에, 선거구제를 개정할 경우에는 시·군·구 당으로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선거구제 형태와 지구당 부활의 문제, 단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연동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안을 다시 정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여성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무소속까지 다 포함해서 ‘성평등 국회를 향한 여성정치참여 확대 결의문’을 내렸습니다. 지역구 여성 30% 의무화, 비례대표 50%를 불이행할 경우에 등록 무효 조항을 도입하라라고 하는 부분하고 정치발전특위에 여성정치참여확대소위 설치·운영의 부분인데요.

두 번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할 부분인데, 첫 번째 안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가 결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은 의무조항으로 돼 있지

않고 여성 지역구 30%의 경우에는 권고 조항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전향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가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강원택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대학교정치학과교수 강원택** 기왕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부탁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논의된 내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원했던 것은 사실 그동안 정치개혁특위든지 혹은 정치발전특위든지 여러 번 국회 때마다 만들어졌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정치발전특위는 우리 정치 상황의 변화와 맞물려서 뭔가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개혁에 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이든 요즘에 관련되어 있는 재판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참고인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권선택 시장 관련 대법원 때도 공개변론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나갔었고요. 아까 윤소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정당후원회 관련된 헌재 때도 제가 참고인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요즘에 사법부의 입장도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을 정치적 참여라든지 혹은 정치적 자유의 관점에서 많이들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저 같이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어처구니가 없는 논쟁 같은, 안에서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이 왜 법에 위반이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거든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솔직히 제 느낌은.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만들어진 선거법 개정의 주된 것은 1958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만들어진 법안에 1920년대 일본 제국주의 시대 선거법의 내용이 우리나라의 선거법으로 들어왔고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규제하는 규제 일변도의 선거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덕흠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저는 사실 약간 의아했었는데 어떻게 선거라는 정

말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을 공부를 해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이런 굉장히 슬픈 현실과 관련해서 이것은 사실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길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특위위원들께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선거운동의 자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번 기회에는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정치학회도 작년에 유사한 내용으로 국회에 저희가 청원을 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번에는 뭔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강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음 교수님 말씀 주십시오.

○**한국입법학회장 음선필** 저도 나온 김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부탁일 수도 있기는 한데요, 아까 박 위원님께서 정치자금 관련된 것은 상당히 전향적인 말씀이시고 대개 동의하고요. 지금 선거운동에 대해서 강 교수 말씀하신 것에 대체적으로 대부분 다 동의할 겁니다.

그 외에 또 중요한 것이 아까 정치자금 관련 투명성의 문제가 되겠고 또 하나는 국고보조금 배분에 관한 방식은 굉장히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정당이 생명선으로 작용할 건가 계속 일종의 병적인 존재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가장 고민하실 문제가 되는데요.

결국 정치관계법은 국회에서 당연히 만듭니까는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이 법을 국회의원에게 맡겨 가지고 잘하겠느냐라는 의문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했으면 좋겠는데 대안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잘해 주기를 바라고 또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인물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좀 나아지려니 기대를 해 보기를 벌써 몇 년 됐습니다.

여하튼 적어도 정치가 특히 정치세력 간에 경쟁구도로 가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걸 위해서는 아마 스스로 자기부정일지 모를 겁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항상 상식화된 말처럼 지금까지 거대 정당 중심의 적대적 공존관계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언제까지 이렇게 정책독과점 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인가, 이게 좀 변화돼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20대 국회가 그나마 어찌됐든 간에 다당

제 구도가 됐다고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보면 하나의 발전의 모멘텀도 줄 수 있는 좋은 계기인데 그중에 하나가 이런 정치자금 투명한 것과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배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주는 것이 그리고 또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역사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똑같은 이런 부탁을 여러 차례 해 왔습시다마는 그래도 뭔가 좀 나아질 거라는 기대 갖는 게, 그래도 소망 있는 것 아니겠어요? 누구 말마따나 지옥의 문 앞에 모든 소망, 희망을 버려라 말이지. 그렇게 하는 것이 국회에 향해져 있던, 불행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더 이전보다 나은, 그런 말씀드렸던 몇 가지라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두 분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회의의 사실상 맺음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유승희 위원** 지금 사실은 선거법상으로 정치자금에 관련한 위반행위는 대폭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라든지 선거운동의 자유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기소비율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하에서 더욱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 이 법에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근본적으로는 사전선거운동 금지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강력한 반발과 반대가 내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부분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지금 이 마이크 관련한 법에 대해서 아까 강원택 교수님께서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력해서 우리 정치발전특위에서는 현실의 문제를 짚고, 현안을 짚고 최소한…… 최대한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최소한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자라고 하는 심정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명수** 위원님, 우리 정치발전특위에서 더 열심히 잘하자는 의견으로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좋은 고견 또 두 분 교수님, 보고하신 이준한 교수님, 박영수 사무차장님, 이런 의견을 정리를 해서…… 다음 주에는 수요일에 소위원회를 하는 걸로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강 병 원	박 덕 흠	박 용 진	박 재 호
송 옥 주	여 상 규	유 승 희	윤 소 하
이 명 수	이 양 수	이 철 희	이 현 승
진 희 경	홍 철 호		

**○청가 위원(1인)**

원 혜 영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한 공 식
전 문 위 원	천 우 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및 기타 참석자**

사 무 차 장	박 영 수
법 제 국 장	신 우 용
한 국 입 법 학 회 장	음 선 필
서울대학교정치학과교수	강 원 택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 문 위 원	이 준 한

**【보고사항】**

**○위원 사임 및 보임**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배덕광	이양수	자유한국당	2017. 3. 6.
박범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2017. 3. 8.